캐나다 장로교의 동성애혐오증 및 트랜스젠더혐오증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된 카운슬링에 대한 재정 지원

배경

2021년, 캐나다 장로교는 Rainbow Communion의 최종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동 보고서는 장로교의 동성애혐오증[1], 위선, 트랜스젠더혐오증[2] 및 이성애주의[3]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139명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캐나다 장로교가 야기한 피해를 인정하여, 치유를 돕는 카운슬링 또는 심리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이 문서에는 어떤 사람이 이 재정 지원의 대상이고 기금이 어떻게 집행되는지에 관한 안내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에 관해 문의하거나 재정 지원을 요청하려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심사위원회 위원에게 연락하십시오.

Carragh Erhardt
Program Coordinator, Sexuality and Inclusion
cerhardt@presbyterian.ca
1-800-619-7301 내선 278

Rev. Ian Ross-McDonald
General Secretary, Life and Mission Agency
imcdonald@presbyterian.ca
1-800-619-7301 내선 289

Rev. Victor Kim
Principal Clerk, General Assembly
vkim@presbyterian.ca
1-800-619-7301 내선 227

The Presbyterian Church in Canada

자주 하는 질문

이 기금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 기금은 캐나다 장로교의 동성애혐오증, 위선, 트랜스젠더혐오증 및 이성애주의로 인한 피해를 경험한 사람의 심리치료 또는 카운슬링을 지원하는 재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기금의 취지상, 캐나다 장로교는 교단에 소속된 교회들, 대학들, 수양관들과 교단과 연관된 다른 프로그램 등을 뜻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피해가 캐나다 장로교 소유의 교회 또는 건물에서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캐나다 장로교의 고용인, 자원봉사자, 교인 또는 출석자들이 저지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재정 지원 신청은 가) 이미 이루어진 카운슬링 또는 심리치료의 비용을 변제받기 위해서나, 나) 지속적인 카운슬링 또는 심리치료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기금을 통해 제공되는 재정 지원은 여러 가지 치료 옵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적 지향 전환 치료는 캐나다에서는 불법이며 캐나다 장로교의 공식 정책 및 신조에 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인의 성지향성 또는 성정체성/표현을 바꾸고자 하는 서비스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재정 지원 신청은 거절됩니다.

어떤 사람이 재정 지원 대상인가?

캐나다 장로교의 동성애혐오증, 위선, 트랜스젠더혐오증 및 이성애주의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재정 지원 대상입니다.

재정 지원에 관해 문의하는 사람은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하고, 장로교의 동성애혐오증 또는 트랜스젠더혐오증이 어떤 부정적 영향을 끼쳤는지 설명하라는 요청을 받게 되지만, 반드시 자신의 성지향성 또는 성정체성을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재정 지원이 제공되나?

신청은 신청인의 필요에 따라 저마다 다릅니다. 재정 지원에 관해 문의하는 사람은 도움을 받고자 하는 전문가의 시간당 수수료와 예상되는 치료 횟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재정 지원 신청을 누가 심사하나?

소규모 위원회가 신속하게 심사합니다. 신청서 제출에 대해 연간 또는 분기별 기한은 없습니다. 모든 신청은 철저하게 기밀로 취급됩니다.

심사위원회는 Sexuality and Inclusion의 프로그램 코디네이터(Program Coordinator), Life and Mission Agency의 사무총장(General Secretary), 총회(General Assembly)의 서기(Principal Clerk) 등으로 구성됩니다.

심사위원회의 작업은 기밀이며, 유관한 세부적 내용만 전체 심사위원회와 공유됩니다. 이 절차와 그 구성에 관한 질문은 재정 지원 신청에 관해 심사위원과 상담할 때 할 수 있습니다.

기금에 관해 문의하고 싶지만 교단 사무실에 직접 문의하는 것은 꺼려질 경우, 어떻게 할 수 있나?

장로교 교회에서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교단 사무실에 연락하기가 꺼려질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본인 대신 심사위원에게 연락하여 재정 지원 절차에 관한 추가적 정보를 구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제 3자는 가족, 친구, 목사, 교회 장로, 정신 건강 전문가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제3자에게 재정 지원에 관해 문의해달라고 부탁한 사람의 이름을 공개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재정 지원을 신청할 때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하나?

공개되는 정보의 양은 재정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재정 지원 신청 접수 시에 이루어지는 대화에는 통상적으로 다음이 포함됩니다:

- 경험한 피해에 관한 일반적 설명과 카운슬러 또는 심리치료사의 도움을 구하는 이유. 피해에 관한 설명에는 해당 사건이 신청인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건에 관련된 사람의 이름 또는 신분 식별 정보를 공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신청하는 재정 지원 금액과
- 지원금의 사용에 관한 일반적 계획. 일반적으로 여기에는 재정 지원 신청인이 도움을 구하고자 하는 전문가의 시간당 수수료,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카운슬러 또는 심리치료사에게 치유를 위한 도움을 받을 예상 빈도가 포함됩니다.

LGBTQI2+만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나? 성지향성 및 성정체성을 밝혀야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나?

Rainbow Communion의 보고서는 동성애혐오증, 트랜스젠더혐오증으로 인하여 교회에서 발생한 피해가 LGBTQI2+ 사람들이 체험하는 피해의 수준을 초과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LGBTQI2+ 사람들의 가족들도 소외감, 무시당하는 느낌, 그리고 험담, 비판 및 괴롭힘의 표적이 되는 것을 보고했습니다. 또한, LGBTQI2+로 짐작되는 사람들도 감시를 당한 적이 있고 동성애혐오증 및/또는 트랜스젠더혐오증의 표적이 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따라서, 이 재정 지원은 LGBTQI2+뿐만 아니라 캐나다 장로교의 동성애혐오증, 트랜스젠더혐오증, 위선 및 이성애주의로 인한 피해를 경험한 이성애 시스젠더에게도 제공됩니다.

장로교의 괴롭힘 정책에 따라 정식으로 항의서를 제출한 사람만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나?

아닙니다. 이 절차는 캐나다 장로교의 성학대 및 성괴롭힘 정책(Sexual Abuse and Sexual Harassment Policy) 및 교회에서의 괴롭힘에 대한 정책 및 절차(Policy and Procedures for Addressing Harassment in the Church)와 관련된 절차와는 별개의 것입니다.

현재 카운슬러에게 상담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아도 재정 지원을 신청할 수 있나?

예. 카운슬링이 시작될 때까지 재정 지원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

1 **Homophobia** is the fear and/or hatred of lesbian or gay individuals, often exhibited by name-calling, bullying, exclusion, prejudice, discrimination, or acts of violence towards anyone who is lesbian or gay.
동성애혐오증은 레즈비언 또는 게이 개인에 대한 두려움 및/또는 증오이며, 종종 욕설, 따돌림, 배제, 편견, 차별 또는 레즈비언 또는 게이인 사람에 대한 폭력 행위로 나타납니다.

2 **Transphobia** is the fear and/or hatred of transgender individuals, often exhibited by name-calling, bullying, exclusion, prejudice, discrimination, or acts of violence towards anyone who is transgender or whose gender expression doesn't conform to traditional gender roles.
트랜스젠더혐오증은 트랜스젠더 개인에 대한 두려움 및/또는 증오로, 종종 욕설, 따돌림, 배제, 편견, 차별 또는 트랜스젠더이거나 성별 표현이 전통적인 성역할에 맞지 않는 사람에 대한 폭력 행위로 나타납니다.

3 **Heterosexism** is the systemic bias which favours heterosexuals and heterosexuality based on the prejudiced belief that heterosexual people are socially and culturally superior to LGBTQI people.
이성애(異性愛)주의 이성애자가 LGBTQI보다 사회적, 문화적으로 우월하다는 편견을 바탕으로 이성애자와 이성애자를 우대하는 제도적 편견입니다.

The Presbyterian Church in Canada

50 Wynford Drive
Toronto, Ontario M3C 1J7
1-800-619-7301
presbyterian.ca